

[별첨]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 안내

- 휴업, 휴직, 훈련 수당 일부 지원(콜센터 1350)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등으로 1월간 총근로시간이 20/100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등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 2/3) 지원 * 1일 상한액: 4.3만원(연 180일 한도)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휴직수당의 2/3(대기업 1/2 ~ 2/3) 지원 * 1일 상한액: 4.3만원(연 180일 한도)
훈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대기업 2/3 ~ 3/4)과 훈련비 지원 * 1일 상한액: 4.3만원(연 180일 한도)

■ 지방세 기본법 관련 세금 징수유예 (해당구청 세무과)

-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징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징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또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징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重傷)으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융자 지원

지원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지원규모	기업당 5천만원	기업당 3억
신청기한	2015.6.10.~지원금 소진시	2015.6.15.~8.31
지원대상	기준 :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신용보증기금과 중복지원 불가	기준 : 관망관련 대다수 업종 ※ 신용보증재단과 중복지원 불가
대출금리	CD금리(91일)+1.5%(가산금리)-1.5%(이자보전) * CD금리(91일) : 1.80%(15.6.9기준)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준 상담 협의
대여기간	5년 이내(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준 상담협의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신용보증부 김성원 팀장 053-430-4332 백종엽 차장 053-430-4342